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(안 제16조의2제7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